

의안번호	2215750
의 회 인	서명옥의원
회 답 일	2026.4.20.
추계번호	25D7402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조(목적)	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를 <u>가정폭력범죄등</u> 으로 규정	
2	안 제3조의2(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)	법원은 <u>가정폭력등행위자</u> 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등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5조(가정폭력범죄 등에 대한 응급조치)	진행 중인 <u>가정폭력범죄등</u> 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- 폭력행위의 제지, <u>가정폭력등행위자·피해자</u>의 분리 -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- 피해자를 가정폭력등 관련 상담소, 보호시설로 인도 -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-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-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가능 고지	재량규정
4	안 제29조(임시조치)	판사는 가정보호사건등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-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(房室)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-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·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-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-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-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- 상담소등에 상담위탁	재량규정
5	안 제40조(보호처분의 결정등)	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- 가정폭력등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-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- 사회봉사·수감명령 - 보호관찰 -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-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- 상담소등에 상담위탁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조(목적)	×	미첨부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조의2(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)	×	
3	안 제5조(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)	×	
4	안 제29조(임시조치)	×	
5	안 제40조(보호처분)	×	

2. 상제 사유

□ 가정폭력범죄와 교제폭력행위를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등으로 규정

-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현행법은 제3조의2¹⁾에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, 제5조에서 응급조치²⁾, 제29조에서 임시조치 및 통지³⁾, 제40조에서 보

1)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의2(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)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(선고유예는 제외한다)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(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(이하 "이수명령"이라 한다)을 병과할 수 있다.

2)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(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)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폭력행위의 제지, 가정폭력행위자·피해자의 분

1의2. 「형사소송법」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

2.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(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)

3.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

4.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

5.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

3)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(임시조치)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(房室)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

2.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·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
호처분⁴⁾을 규정하고 있음

- 현행법의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범죄등으로 규정하고 교제폭력을 포함함에 따라 교제폭력행위에 대한 응급조치, 임시조치, 보호처분 집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
□ 안 제3조의2의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

- 교제폭력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처분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행동의 진단·상담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, 형벌과 병과되는 수강명령 집행단가 및 집행건수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□ 안 제5조의 응급조치

- 교제폭력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폭력행위 제지, 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 현행범체포 등 신병 확보, 관련 증거 수집 등 신고출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단계에서 응급조치 추가 발생 건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안 제29조의 임시조치

- 개정안에 따라 교제폭력행위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통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 처분 및 상담소등에 상담 및 교육위탁 처분의 경우 안 제48조(비용의 부담)⁵⁾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등 행위자

-
- 3.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 - 4.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
 - 5.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
 - 6.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

- 4)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0조(보호처분의 결정 등)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.
 - 1.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
 - 2.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
 - 3.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
 - 4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회봉사·수강명령
 - 5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관찰
 - 6.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
 - 7.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
 - 8.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

- 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- 다만 현 시점에서 임시조치 시행 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 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□ 안 제40조의 보호처분

- 개정안에 따라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보호처분 중 보호관찰을 실시할 경우 보호처분 집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감호위탁의 경우 기존 사업인 ‘갱생보호활동(2026년 기준 484억 6,800만원)’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- 또한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처분, 상담소등 상담 및 교육위탁 처분의 경우 안 제48조(비용의 부담)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등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건수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□ 참고로 2020~2023년 연도별 가정폭력 접수 건수 및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가정폭력 접수 건수: 2020~2024년

(단위: 건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
가정폭력 접수 건수	49,755	52,436	51,023	57,786	51,573

자료: 법무부

[표 3] 교제폭력 형사입건 건수: 2020~2023년

(단위: 건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증가율
교제폭력 형사입건건수	8,951	10,538	12,828	13,939	15.9%

- 5)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13733) 제48조(비용의 부담)
- ①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등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. 다만, 가정폭력등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.
 - ② 판사는 가정폭력등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(豫納)을 명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등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, 청구 및 지급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